

의안 번호	159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건】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11. 13.(수)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9. 12. 5.(목)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9. 12. 6.(금)

2. 제안이유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법 개정 및 시행(2012. 4. 10)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법 개정 및 시행(2017. 9. 19)

3. 주요내용

-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
 -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금회 보고: 76건(도로 71, 주차장 1, 공원 2, 공공청사 2)

나.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

1)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83건

(도로 77, 주차장 1, 공원 2, 공공청사 2, 체육시설 2)

2) 단계별 집행계획

· 1단계(3년 이내 시행): 11건(도로10, 체육시설1)

· 2단계(3년 이후 시행): 72건(도로67, 주차장1, 공원2, 공공청사2)

4. 근거법규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

5. 검토의견

○ 본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10년이 경과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를 권고 할 수 있음.

- 같은법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집행계획은 3년 이내 시행을 1단계, 3년 후에 시행하는 시설을 2단계로 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함.

○ 주요 내용으로는

- 법 제48조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금회 보고는 도로 등 총 76건임

(도로 71, 주차장 1, 공원 2, 공공청사 2)

- 법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설은 83건으로
 - 1단계(3년 이내 시행) : 11건(도로10, 체육시설1)
 - 2단계(3년 이후 시행) : 72건 (도로67, 주차장1, 공원2, 공공청사2)

- 이상과 같이, 본 보고 및 의견청취 건은 관련법령에 따라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청사, 체육시설에 관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보고와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 건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가할 것으로 사료됨.

근거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전문개정 2009.2.6.]

[제목개정 2011.4.14.]

[시행일:2012.7.1.] 제48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 ⑤ 공고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2012.7.1.] 제85조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4.10., 2014.11.11.>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 중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4.10., 2014.11.11.>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⑦ 제6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제목개정 2012.4.10.]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

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7.9.19.>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4.10.>

③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1.7.1.>

④법 제8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제25조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단계별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제9조(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지방의회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 영 시행 당시 관할 구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3월 31일까지 매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에 대한 보고를 안분(按分)하여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권한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별표 25의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11. 5, 2014. 6. 30>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9>

③ 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임사무 중 별표 25의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5, 2014. 6. 30>

[별표 25] <개정 2016.12.29, 2017.11.02>

권한 위임 사무(제58조관련)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p>1.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p> <p>2.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 중 다음의 사무(단, 위임된 사무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입안할 수 있으며, 입안한 내용이 둘 이상의 구·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공동 입안하거나 협의하여 입안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하거나 입안자를 지정할 수 있음)</p> <p>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도시기반시설 중 다음의 사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에 한함) • 주차장 • 자동차정류장(시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제외)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 공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장(폭 20m 미만인 도로에만 접한 경우로 한정한다) • 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에 한함) • 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송·배수시설에 한함) • 전기공급설비 • 가스공급설비 • 방송·통신시설 • 공동구(시·종점이 해당 구·군에 한함) • 시장 ○ 공공·문화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에 한함) • 운동장 	<p>「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제3항</p> <p>법 제25조, 제26조, 제27조</p>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범 규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골프장 제외) • 공공청사(구·군청,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등 구·군단위 청사에 한함) • 문화시설 • 도서관 • 연구시설 • 사회복지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방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소하천에 한함) • 우수지 • 방화설비 • 저수지(농업용수에 한함) • 방풍설비 • 방수설비 • 사방설비 • 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시설 • 공동묘지 • 도축장 • 장례식장 • 종합의료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 환경기초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제외) • 폐기물처리시설 • 폐차장 		
<p>3.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 및 처리결과 통보 (입안권이 위임된 사무에 한함)</p>	<p>법 제26조 영 제20조</p>	
<p>4.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초조사(입안권이 위임된 사무에 한함)</p>	<p>법 제27조</p>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5. 주민 등의 의견청취(입안권이 위임된 사무에 한함)	법 제28조	
<p>6.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법 제2조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도시기반시설 중 다음의 사무(법 제88조제6항의 실시계획에 반영된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다. 다만, 별표 25 제2호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폭 20m 미만의 도로에 한하며 시장이 직접 입안한 사항은 제외한다) • 주차장 •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 ○ 공간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장(소로 이하에만 접한 교통광장) • 공원(어린이공원·소공원에 한함) • 공공공지 ○ 유통·공급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송·배수시설에 한함) • 시장 ○ 공공·문화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에 한함) • 체육시설(골프장 제외) • 공공청사(구·군청,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등 구·군단위 청사에 한함) • 문화시설(공연장, 미술관, 문화시설로서 구·군 단위시설에 한정함) • 도서관 • 사회복지시설 • 공공직업훈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p>법 제30조 영 제25조</p>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소하천에 한함) • 우수지 • 방화설비 • 저수지(농업용수에 한함) • 방풍설비 • 방수설비 • 사방설비 • 방조설비 ○ 보건위생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묘지 • 장례식장 • 화장시설 • 도축장 • 봉안시설 • 자연장지 ○ 환경기초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제외) • 폐차장 		
<p>7.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공람(결정권이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p>	<p>법 제32조</p>	
<p>8.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사무(결정권이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p> <p>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고시</p> <p>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의 의회 보고 및 해제 권고에 대한 조치</p> <p>9. 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사무 중 다음의 권한(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안 및 결정·변경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p> <p>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에 관한 입안·결정·변경결정</p> <p>나.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결정</p>	<p>법 제33조 법 제48조</p>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p>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관한 입안·결정·변경결정</p> <p>라. 결정 및 변경결정 고시된 지형도면의 작성 및 고시</p> <p>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의 고시</p> <p>10.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의 매수여부의 결정, 매수결정의 통지 및 매수절차 이행 등 매수청구 일체의 사무 (결정권이 위임된 사무에 한함)</p>	<p>법 제47조</p>	
<p>11.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무(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개발행위 중 산림 안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방사업법」에 따른다)</p> <p>①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p> <p>②토지의 형질변경</p> <p>③토석채취</p> <p>④토지분할</p> <p>⑤녹지지역안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p> <p>12.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고시. 다만, 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p> <p>13.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원상회복명령, 대집행</p> <p>14. 개발행위 준공검사 및 후속조치</p> <p>15.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도시계획 결정권이 위임된 사무에 한정함)</p> <p>16.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정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추진하는 경우는 제외)</p>	<p>법 제56조 법 제57조 법 제59조</p> <p>법 제63조</p> <p>법 제64조</p> <p>법 제62조, 제65조</p> <p>법 제85조</p> <p>법 제86조</p>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 고
①시행자 지정 ②실시계획의 작성·변경·폐지의 인가와 이에 관한 공고, 공람, 고시, 협의 등 ③준공검사 및 후속조치	법 제88조 법 제98조·제99조	
17. 기초조사 및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등에 따른 타인의 토지출입허가에 관한 사항 (위임된 사무에 한함) 18.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위임된 사무에 한함) 19. 영 제93조제4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특례 적용에 관한 사무(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무 포함) 20.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무 (단, 위임된 사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구역지정, 설치계획수립, 사업시행에 대해서는 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②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③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④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징수 ⑤ 기반시설설치비용 관리·사용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운영 ⑥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계획 등에 관한 공고, 열람, 고시, 협의 등 ⑦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교통건설국란 제6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역 안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예산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⑧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별표 25 제16호)	법 제130조 법 제133조	

24 (제220회-복지건설위제6차부록)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범 규	비 고
21.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사무. 다만, 시의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22. 법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 23. 법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해취약성분석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무		